



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야생조류 고병원성 AI(H5N8형) 검출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

1. 관련: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-698('21.1.21.)호, -700('21.1.21.)호, -701('21.1.21.)호, -702('21.1.21.)호, -703('21.1.21.)호, -704('21.1.21.)호, -705('21.1.21.)호
2. 대구 동구(가남저수지), 경기 고양시(대장천)·포천시(포천천)·평택시(오산천), 강원 춘천시(학곡천)·원주시(원주천), 충북 청주시(무심천)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가 검출되었기에,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자 하오니, 유관기관(단체)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기관(단체)별 방역조치 강화 내역

○ 검출 시·도(시·군) 및 야생조수류 예찰지역(방역대) 내 지자체

- 해당 방역대 내 기초치된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태세 지속 유지
 - * 해당 지역 내 가금 및 가금 생산물 이동 시 방역관리 철저[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-6354('20.12.3.)호 참조]
- 지자체 전담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가에 축사 내·외부 매일 소독,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, 외부인·차량의 농장 출입 시 차량 및 개인 소독,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·보수, 축사간 이동 시 전용장화 착용 등의 방역 수칙 홍보 및 지도·점검 철저
- 방역대 내 및 검출 시·군 관내 모든 가금농가 예찰·검사
 - * 검사방법: (닭) 임상검사, 전업농의 경우 폐사축(폐사축이 없을 경우 분변으로 대체)에 대한 간이키트검사 실시(필요 시 혈청검사)
(오리·기타가금류) 정밀검사(rt-PCR)
 - ※ 검사 결과는 우리 부 AI 상황실로 매일 18시까지 당일 실적 보고
-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·차량의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초소 설치

- *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명령서 발부
-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한 진입금지 명령
- *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이 포함된 시·군에 소재하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한 진입금지 명령 조치
- *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명령서 발부
- **검출 시·군** 전통시장(가금판매소, 차량 이동식 가금 판매 형태의 영업 포함) 운영 중단(이동제한 해제 시까지)
- * 전통시장별 전담공무원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운영 중단함을 해당 시장 내 가금판매소 등에 통보하고, 이행 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
- **검출 시·군**에서 타 지역(시·군·구)으로 나가는 축산관련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철저
- 방역대 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는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, 필요 시 수매·도태

○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외 지자체

- 전국 가금 사육농가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지도·홍보
- 전국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*은 타 가금농장 등으로부터 가금을 구입하거나 판매를 금지 권고
- * 축산법 상 등록 대상 이하 규모(50㎡ 이하)
-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은 살아있는 초생추·중추(모든 가금류 70일령 미만) 및 오리 유통 금지
- * 전통시장별 전담공무원은 살아있는 초생추·중추·오리 유통 금지 여부 주 1회 이상 확인
- 전국 전통시장 "일제 휴업·소독의 날" **매주 운영**

○ 농림축산검역본부

- **검출 시·군**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여부를 현장 확인 후 우리 부에 결과 보고
- * 5일장 형태의 경우 시장이 열리는 날짜에 맞춰 현장 점검 추진
- 전국 전통시장·가든형식당 방역 점검 시 살아있는 초생추·중추·오리 유통 여부 및 "일제 휴업·소독의 날" 운영 여부를 포함 점검하고, 그 결과는 매주 금요일 우리 부 AI 상황실로 보고

○ 환경부

- 「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」에 따른 예찰 강화 및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조치

